

대법원 2000추36 판결 (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)

동장이 수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

판시사항

- [1]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'합의제 행정기관'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
- [2]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(적극)
- [3]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(적극)
- [4]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,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(적극)

판결요지 발취

- [1] ...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을 목적으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외에,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바, **그러한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... 주민자치위원회가 ...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...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**
- [2]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수임사무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,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소정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장과 같은 하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역시 동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규정 내용상 분명하며, 달리 동장이 그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... **법령에 위반된 규정이다.**
- [3] ...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**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·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**, 또 집행기관을 비판·감시·견제하기 위한 의결권·승인권·동의권 등의 권한도 지방자치법상 **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...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**이다.
- [4]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, 다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.

사건의 경과 (판결 이유 중)

원고(인천광역시 동구청장)가 ... 2000. 2. 10. 피고(인천광역시 동구의회)에게 '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'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같은 달 25일 그 중 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등을 수정 의결하였고, 그에 따라 원고가 ...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2000. 5. 15. 당초의 수정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사실 ...

(1) 제7조 제1항은 ...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관할 동장이 하되,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, (2) 제7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**동장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**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, (3) 제17조 제2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원고에게 추천함에 있어 **당해 지역 구의원과 사전 협의**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...

주문

피고가 2000. 5. 15.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한 **재의결은 효력이 없다.**

※ 이 문서는 판결문의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이유 중 핵심 부분의 발췌임.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.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이후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것.